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신탁방식 주택연금 적용사항 정비, 고객 요청사항 반영 등 업무처리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이행청구요청 통지 유보 신청대상자 명확화(신탁방식)
- 나.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대상자 명확화(신탁방식)
- 다. 담보권 실행 유예 추가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장석진 차장(1750@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13
- 팩스번호 : 0505-036-0953

붙임: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3장 보증채무이행	
2.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요청방법 등 다. 이행청구요청 통지의 유보 1) 유보 대상 (생략) 가) 피보증인(피보증인 사망 시 <u>상속인 중 1인 이상</u>)이 담보주택 매매 등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서(<u>붙임21</u>)를 제출하며 이행청구요청 통지 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 (생략)	2.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요청방법 등 다. 이행청구요청 통지의 유보 1) 유보 대상 (현행과 같음) 가) 피보증인(피보증인 사망 시 <u>저당권 방식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 신탁 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 중 1인 이상</u>)이 담보주택 매매 등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서(<u>공사소정양식</u>)를 제출하며 이행청구요청 통지 유보를 요청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이행청구요청 통지 유보 신청대상자 명확화
제4장 구상권관리	제4장 구상권관리	
제1의2절 담보권 실행 및 유예 2. 담보권 실행 유예 가. 유예 사유 및 기간 (생략) 1) 피보증인(피보증인 사망 시 <u>상속인 중 1인 이상</u>)이 담보주택 매매 등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서(<u>붙임21</u>)를 제출하며 담보권 실행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 3) (생략) 4) 구상권 회수를 위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 1), 3)에 한하여 1회 추가 유예할 수 <u>있다</u> .	제1의2절 담보권 실행 및 유예 2. 담보권 실행 유예 가. 유예 사유 및 기간 (현행과 같음) 1) 피보증인(피보증인 사망 시 <u>저당권 방식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 신탁 방식의 경우 귀속권리자 중 1인 이상</u>)이 담보주택 매매 등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서(<u>공사소정양식</u>)를 제출하며 담보권 실행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 3) (현행과 같음) 4) 구상권 회수를 위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 1), 3)에 한하여 1회 추가 유예할 수 <u>있고,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2회 추가 유예할 수 있다</u> .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대상자 명확화 담보권 실행 유예 추가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의3절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권의 실행 등 2. 공매공고 및 실시 가. 공매 진행 절차 1) ~ 6) (생략) 7) 재공매 신탁부동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매하며, 재공매 시에는 위 ‘2. 가. 3), 라)’에 따라 차감된 가격으로 진행한다.	제1의3절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권의 실행 등 2. 공매공고 및 실시 가. 공매 진행 절차 1) ~ 6) (현행과 같음) 7) 재공매 신탁부동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매하며, 재공매 시에는 위 ‘2. 가. 1)’에 따라 차감한 가격으로 진행한다.	인용 근거조항 정비
<u>신설</u>	<u>부칙 (9)</u> <u>이 기준은 2024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